

준비서면

사건 2021재누181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가)제7행정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시작

1.

사건번호 2001재누15째, 2004년 4월30일 변론 일에 문재인님이 재판

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사건을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비서실장, 지금은 대통령)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그랬다고 생각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고 감사함을 예기하고,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을 좋아해 노무현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등의 예기를 했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 몰라본 것에 죄송한 맘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바르게 판결하기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2002년 5월경 “폭로” 책으로 편집해 전국에 제보하여 법원에 괴심 죄가 있는데, (“폭로” 책 광고를 신문에도 몇 번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광고 할 때는 법원에서 협박전화 왔습니다. “죽고 싶어” “누구십니까?” 하니 “쳇” 하면서 끊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서울 530국 법원번호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몰라본 것이 괴심 죄가 더하여 졌나 하는 맘입니다. 바르게 판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법원에 가보면 “자유, 평등, 정의” 문구가 돌판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색합니다. 왜냐면

‘98재다275판결문(판례)’에는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 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유 없이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6재다2039 판결’은 법률공단에 가서 상담했다고 준비서면에 설명했는데, 똑 같은 내용으로 각하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민사소송법 제 208조” 내용대로 알 수 있도록 판결해주세요. 타당한 이유이면 승복합니다.

서론

○.'2018재누297 판결문' 각하 이유에 있는“(대법원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안 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공단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검색이 안 되어 법률공단 상담원은 비슷한 내용이라며 ‘98재다275판결문’을 인쇄해 주었습니다.

■ 2018재누297 판결문을 보더니

법률공단직원 : 이 사건 오래됐네요. 왜 자꾸만 합니까?

저 : 이유 없이 증거 묵살하니까 그렇죠.

법률공단직원 : (2018재누297판결문에 있는 내용보고)이유는2000누6383 판결문에 있을 겁니다.

저 : 없습니다.

법률공단직원 : 그렇리가 있습니까?

저 : (98재다275판결문을 보면) 여기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없습니다. 법원에 낸 것 집에 있는데 가지고 와서 확인시켜 줄까요?

법률공단직원 : 아닙니다.

이 부분 맷음

법률상담하는 분도 판례'98재다275판결문'에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합니다.

1. 그동안 내용

원고는 회사발전과 국민편의를 위해 19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 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했는데, 쾌심 죄로 상관님들은 진급관계, 대학원공부 및 여러 가지를 권한을 남용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부 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첩되어, 한국통신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들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심사 및 여러 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도 '감봉 2월'이라는 징계의 처벌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서도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 2002년 5월경에는 이 사건 감봉2월 징계 및 책(서울고등법원 2001 재누15 때 2002년 5월경 대법원 2000두8004까지의 내용을 '폭로'책('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와 같은 내용임)으로 편집해 약 400여 곳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 했습니다.)을 낸 것은 회사를 읊해하려는 목적이
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철회를 위해서도 이 사건
의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
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각하, 대법원2011두113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1재누229각하, 대법원2012두1235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2재누172각하' 대법원2013두234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3재누148각하, (2013재누148 관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대법원2014무33 심리불속행기
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169각하(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불이행),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275각하, 대법원2016두7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101각하, 대법원2016두46168 심리불속행기
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293각하, 대법원2017두45674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7재누139각하, 대법원2017두72966 심리불속
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99각하, 대법원 2018두45459 심리불
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8재누297각하, 대법원 2019두33026 심
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9재누72각하, 대법원 2019두5936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20재누61각하, 대법원 2020두

4989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21재누37각하, 대법원 2021
두52679 심리불속행기각, 불복하여 현재 고등법원 2021재누181 이 사
건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 ①.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
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 ②.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의 2호적'
갑14의 1,2,3호적,] 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적. 갑
14호적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
단을 누락한 때

이 부분 맷음

- ①. 2000년6383때부터 주장했습니다. 모순되고, 잘못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자꾸자꾸만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어른
들은 옳고 나쁨을 판단 못합니다. 어른들은 망신당하는 일을 합니다.
등의 예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②. 사정이 된다면 1인시위도 하며, 로스쿨 제도 시행 확정되기 전 대법원 2008두7045 때(2008년 6월에 약 800여 군데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사 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했습니다.)처럼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와 같이 책으로 편집해 더 많이 제보하고 싶습니다.

3. 본인의 주장

이 사건 청구취지

-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 .전화번호지정 업무제안 심사 바르게 하고.
- .97년도 석. 박사과정 선발심사 바르게 하고.
- .회사사보에 부당하게 게제 안한 것 게재하라. 입니다.

설명하기 위한 예로(99구23983, 2000누6383 때 주장내용 일부분)

갑 제3의 1~14호증(업무제안 심사내용)

갑 제4의 1~7호증(그 당시 한국통신 사장, 대구본부장 민원답변서 등)

갑 제30의 1, 2호증(대학원공부를 하면 '시간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사내교육 사규)

☞ 청구취지의 진실을 밝히려고 99구23983, 2000누6383때 갑 제1호 증에서 갑 제30호 증까지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데. 묵살했으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기록 재심피고(변호사)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주장을 할 때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와 주장을 묵살했는데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록을 보면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의 재판 그리고 여러 번의 ‘재심청구의 소’를 기각 혹은 각하한 사건의 처분은 전부가 위법합니다.

4. 맷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사회정의와 인권을 판결로서 보호하라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억울한 건 알겠는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하고 문의하니 답변하지 않고 변론 종결했습니다.(2010재누62 변론) ‘증서 묵살하여 판결했습니다.’ 주장하니 판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2012재누172, 2019재누72 변론) 또 타당한 이유이면 승복합니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유 없이 변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 많이도 했습니다. 더 억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는 것 입니까?

헌법과 법률은 보이는 문자로 되어 있으나 양심은 보이지 않아 그 존재와 내용을 알기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법률보다 상위인 것 같습니다. 헌법 103조를 고쳐서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제보하고 권리주장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때 및 재심 기록
을 잘 살펴주셔서 판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발췌)

'법관의 양심' 또 하나의 법원(法源)일까 – 대한변리사회 (kpaanews.or.kr)

'양심'에 따른 재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어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와 일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우리의 제헌 헌법도 제77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5.16 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을 ‘계수’, 아니 ‘이식’한 것이었다.

일본 헌법 제76조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도 초안에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 또는 상위에 있는 하나의 법원(法源)으

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였다.

첨부: 사본 2부

2022. 3. .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